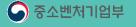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기준 안내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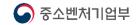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 교육 · 멘토링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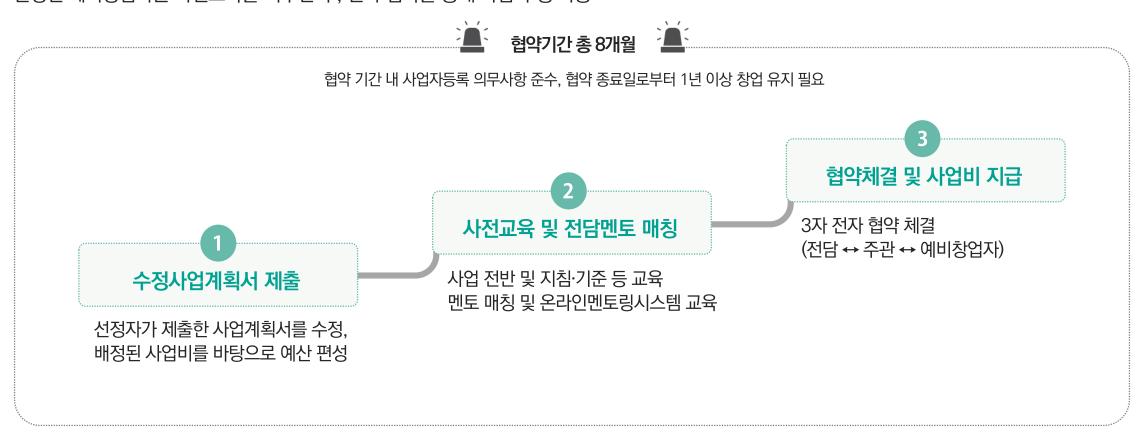
모집구분 (모집기간)	주관기관	모집인원		지원한도	
일반분야 2.3(월) ~ 3.16(월)	창조경제혁신센터 (19개)	330명	청년	1,100명 내외 *최종 선정자 기준	최대 1억원 (평균 51백만원)
		220명	중장년		
	대학 (17개)	330명	청년		
		220명	중장년		
특화분야 3.17(화) ~ 4.20(월)	광주과학기술원 외 12곳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총 19개 분야)	375명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25명	숲 연령	600명 내외 *최종 선정자 기준	
	벤처기업협회 (소셜벤처)	100명	100명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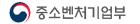




협약절차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전자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 가능







승인·관리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

① 사전검토 (전담멘토) : 사용 계획 검토

② 사전승인 (주관기관) : 사용 계획 승인

③ 사업비승인 (주관기관) : 실 사용 승인

협약기간(8개월) 동안 배정받은 사업비를 주관기관의 집행 승인에 따라 창업 활동에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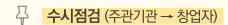


사업수행

사업비 사용에 관련하여 시기별 점검 진행 예정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주관 → 창업자)

• 점검결과, 완료(보통·우수), 실패 판정



팀창업 의무사항 미이행 및 기타 중대 사유 발생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3개월마다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 창업기업 현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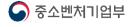


사업수행: 협약 기간 전체 (8개월)

- 사업비 집행 및 창업교육(총 40h)이수
- 전담 멘토링 진행 (월 2회, 총 2시간 이상 의무 진행)
- 포인트 멘토링 진행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이용 자율 진행)

중간점검 (주관 → 창업자) : 협약 기간의 ½ 시점

점검결과 계속, 보완, 중단,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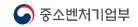


₩ 사전교육 이수 필수

선정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교육 미 이수 시, 선정 취소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교육 서비스 제공

※ 미 이수 시, 선정 취소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	
8시간	16시간	16시간	
	🍱 전체 창업교육 총 40시간 이수 필요 🕍		
전담기관 진행	주관기관 진행	교육기관 진행	
협약체결 전 (선정된 예비창업자 대상)	협약진행 중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 대상)	협약진행 중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 대상)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개요 및 사업 운영 기준, 사업화 자금 사용에 대한 교육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기초교육 및 창업기업 교류 프로그램	성과창출(Scale-up) 단계 진입 기반을 위한 전문적인 실습·체험 중심의 실무교육 * 4개 분야(마케팅·투자·브랜드 개발·시장조사)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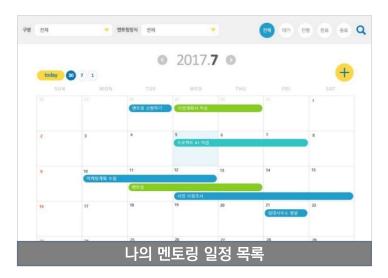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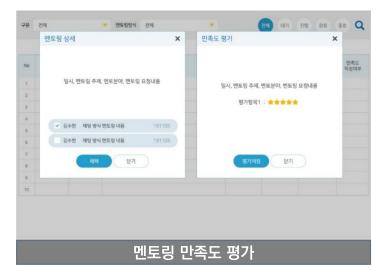
전담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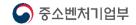














[사업비 집행기준 안내]



사업지침

창업기업 제재 조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內 [붙임 제2호] 참조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예비창업패키지 관련 지침 및 기준 숙지 필요



예비창업패키지 상위 지침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등 사업 관련 중요사항 안내



지침 등을 미준수하여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비 제재 및 환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지침 및 기준을 반드시 숙지

다운로드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k-startup.go.kr) - 사업화 - 예비창업패키지 - 자료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03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등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8 38 × 2017.05.01 >

개정 < 2017.09.28 > 개정 2018.08.20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 - 341호 개정 2019.02.01 . 중소변처기업부 공고 2019 - 58호 개정 2019.07.26 중소병원기업부 공고 2019 - 3198 개령 2020.03.26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 - 203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량 제5조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인 참조기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참업지원사 업(이하 "지원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쟁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원체계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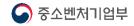
- 1. "참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참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팀)로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2. "예비창업"이란「중소기업장업 지원법」제4조의2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창업초기"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의3호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남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4. "참업도약기"만 '참업초기(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후부터, 사업 개시일 기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 2019.05.02. > 개정 < 2019.06.21. > 개정 < 2020.04.06.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예비창업패키지(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 이라 한다)은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원체계 관련 용어 1. "범부처추진단"이란 4자산업 분야 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한 범 부처 협력체를 알한다 2. "교육기관"이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면례"이란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동 사업만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4. "젠담멘토"만 창업기업의 사업진도 정검, 창업·경영자문 등을 전담하여 멘토링을 제공하는 창업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시장 기술전문가 등을 말한다. 5. "PD(Program Director)"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소속되어 전담면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가 등을 말한다. 나, 지원내용 관련 용어 6. "사전교육"이란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운영 계획, 사업비 집행기준, 기업가 정신 등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역량강화교육"이란 아이디어보완 및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이론 중심의 교육을 8. "심화교육"이란 성과장춤을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말한다. 9. "사업비"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기업, 주관기관, 교육기관에게 지급 하는 자금을 말한다. 창업기업에게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시제품제작 등 창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을 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사업화자금

사용방법



전용카드

금액 한도를 정하여 바우처(사용권)을 지급하면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 서비스 구매 후, 공급가액에 한하여 승인 신청

- * 사업비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 사용 금지, 사업비카드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카드 사용금지
- ** 부가세 부분은 예비창업자가 직접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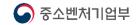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예비창업자는 개인, 창업기업은 기업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급 신청

* 부가세 부분은 예비창업자가 직접 부담

-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 건**의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사전승인 기준금액 이하 건도 필요한 경우 심의 가능
-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패턴 등을 분석하여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이상거래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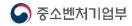


집행 기준

창업활동비(월 50만원 한도) 외 타 비목의 경우, 협약 금액 내에서 자율 집행 가능

보조세목

비목 / 세목	보조세목	정 의
재료비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SW등)	자산취득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보수	창업기업 소속직원(정규직)에 대한 보수
الالحار	기타직보수	창업기업 소속직원(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인건비	상용임금	창업기업 소속직원(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ココム人コ	일반수용비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운반비, 보험료, 법인설립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시), 회계감사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보관료
여비	국외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용역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창업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월 5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경비







재료비

정의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능
-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멀티탭. 키보드 등 사무용품 구입
- 시제품 재료 과다 구매
- 시제품 재료를 기성품으로 과다 구매

- 구매한 재료가 협약기간 내에 미납품
- 시제품과 관련성이 적은 재료 구입



외주용역비

정의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장조사,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mark>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mark>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산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예시: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 외주용역의 과업과 <mark>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mark>
- ※ 외주용역 1,0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 *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은 주관기관에서 전담멘토(PD) 검토의견서, 각 용역 관련업계 등 전문가의견을 포함한 내부문서(검토결과 포함) 또는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
 - * 외부 전문업체(업력 1년 미만)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창업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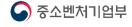
외주용역비

- ※ 프리랜서 중계서비스를(크몽, 위시켓 등)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 외주용역비용 과다 지급
- 개발 결과물 미흡 (홈페이지, App개발 용역 결과물이 정산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거나, 온라인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용역 계약업체(A)와 실제 진행업체(B)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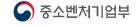


기계장치비(공구,기구,비품,SW 등)

정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 <mark>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mark>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00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지원사업 자산」으로 구분하여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구매한 기자재는 임의처분 불가
- ※ PC, 노트북 등 개인 사무용 컴퓨터는 대표, 재직 임직원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
-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단,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
-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화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 ※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
 - * 단, 단순 제품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 구입 불가







기계장치비(공구,기구,비품,SW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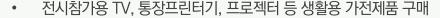
정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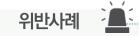
유의사항

※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증폭기 등)의 경우 창업활동비 활용





- 실험대, 실험거치대 등 창업자의 사업아이템과 관련성이 낮은 기자재 구매
- 기자재 구매 기한 초과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구매



- 무선키보드, 외장하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 * 창업활동비로 집행 원칙
- SSD, GPU, 메모리 등 PC 성능 향상 부속품 * 창업활동비로 집행 원칙







특허권/무형자산취득비

정의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협약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 *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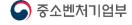
-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
-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위반사례 📶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인건비

정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제외)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단,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창업기업은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주관기관에 해당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집행
- 아래의 표에 '인건비 산정기준' 표에 따라 소속지원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직원의 과거 소득이 법정최저 급여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의 인건비 산정기준 적용

구분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비고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급여총액/해당연도 근무개월 수 * 단, 신규 채용 직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하단의 역량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인 경우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2,338천원×참여율×참여개월 수 창업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2,493천원×참여율×참여개월 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산업·규모별 상용임금총액 기준(20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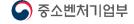


- ※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 (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자의 인건비 지급불가
- ※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불가



- 4대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 사업비로 대표자 인건비 지급
- 협약종료 1개월 이내에 고용된 신규직원 인건비 집행

-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과다 청구
- 실제 근로하기 이전에 인건비 사전 지급







정의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총 12개 항목 (기술이전비 외)



기술이전비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를 집행 가능. 단, <mark>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mark>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멘토링비

창업아이템 사업화, 기업 경영을 위해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125,000원 초과하는 멘토비 집행 시 기타소득세(8.8%) 공제 후 집행(상위법 기준)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기자재임차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단가 적용







정의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총 12개 항목 (기술이전비 외)



사무실임대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주관기관 담당자가 수시로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여부 확인



회계감사비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서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481,818원)을 의무계상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창업기업 창업아이템의 운반, 수출 시에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세무·회계비

기장대행 수수료, 법인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으로 집행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세무·회계비 집행 불가



범인설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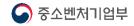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시소요비용(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집행



기술보호비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로 집행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기술보호비 집행 불가







유의사항



기술이전비

- ①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 ②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 ③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 ④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시험·인증비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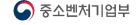
멘토링비

멘토링비는 멘토 1인당 1일 50만원 초과 불가



기자재임차비

- ①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 ②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 ③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④ 코워킹스페이스(공유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



법인설립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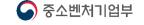
세무·회계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선정자는 집행 불가



기술보호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선정자는 집행 불가







여비

정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 항공, 선박 등 해외 이동수단에 소요되는 실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 ※ 본 사업의 여비는 타 국가(해외) 출장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지원
-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 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
- ※ 공항버스 기차 등 공항으로 이동을 위한 국내 여비는 창업활동비를 활용





교육훈련비

정의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 ※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가능
- ※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심화교육의 임직원 참여의 경우 교육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참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1인당 50만원의 수강료 지급



광고선전비

정의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 비용* 및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등
- 마케팅을 위해 계약,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기준, 유의사항 준용
- <mark>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mark>

- ※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부채, 샘플화장품 등), 유니폼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 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비즈머니 등) 구매 불가



창업활동비

정의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여비, 문헌구입,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월 50만원 한도로 지급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계좌로 지급





기타 안내사항

사업비 집행 관련 별지 서식 목차

자료실 內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양식

사업비 집행관련 별지 서식 목차

순번	구분	별지 서식 명	비고
1	외주용역	표준용역계약서	
2		검수확인서	
3	기자재 임차	기자재 임차 계약서	
4	인전비	표준근로계약서	
5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 표준근로계약서	
7		표준근로 계약서(영문)	
8		급여대장	
9		근무상황부	
10	ભોમો	국외출장계획서	
11		국외출장 결과보고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세부관리기준 內 [별표5]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세부관리기준 內 [별표6]

[발표 6] 청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익사항 [창업기업용 「예비창업특기자」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처리기간

구분	내용
창업기업 협약기간	• 협약제결 후 10개월 이내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가능기간	• 현약기간 이내의 지물원인 행위에 대해 사업비 집행가는 • 현약기간 중 지물원인행위가 완료된 음액은 현약으로 후 15일 이내 집행가는 • 서비 없자 요명을 입점 물의 구매어(응기간이 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현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주관기관의 창업기업 사업비 처리기간	•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지급요청서 수렴 후 14일 이내에 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한 경우 창업기업에게 사전 안내(구관기관별 청업기 업 사업비 지금일 상이)

□ 사업비 집행·청구

	구분	48
85		·사업의 집항 시 천단보의 사진인들 육한 후 전형 사업의 지금요청세열지 2의 및 가단별표 4의 전급 등자료를 요한인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의 지금을 요항 근위기관의 사원인은 구위기에서 각 음악 관련점계 등 전문가의검상 조리케건의 사원인은 구위기에서 각 음악 관련점계 등 전문가의검상 조리케션신터도의 경우 전당이 의견을 표한한 '부분시업표결과 포함' 또는 사업운영유원회를 통해 얻는 구공기공은 관련서부를 보려
결재수단별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법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역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본가세 부분은 청업기업이 부탁) • 세금계산서 공급 받는 자 기재 유령은 아래와 같음 - 미창업 : 데네하십자 개인으로 기재 - 정입 : 장업자의 기업명으로 기재
	사업비카드	- 사업비 지물 시 '사업비카드' 사용이 원칙 - 사업비카드 이원인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공지 - 결제대금 로 공급가면 부분에 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전달기관에서 무관기관을 통해 장답기업 사업비기회자(사업비용하)= 지급. - 결재 시 사업비카드에 직접된 카르 포인트 사용공지
김 영 및	구매품목(함계) 300만원 초과 시	구매승인 요정세별지 5회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원승인을 목한 후 집행 2전만원을 조과하는 구매행위 시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황매	인건비	 창업기업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선 지금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금을 요청 하거나, 주관기관에 해당 뭘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직원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음
E E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휴페이지 등)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개발 등을 위한 외주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 또는 외부전문 업체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집행

다운로드 경로

공통 -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필요

K-Startup 홈페이지 (k-startup.go.kr) - 사업화 - 예비창업패키지 - 자료실

